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08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강선우·서미화·김 윤

김문수・남인순・소병훈

홍기원 • 이재관 • 김한규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,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,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, 지역 내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"지역의사"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(안 제2조).
- 나.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교 재비,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(안 제9조).

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지역의사"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지역의사선발전형"이란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.
 - 3. "의무복무기관"이란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기관·시설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·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 - ② 지역의사 양성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다.
- 제4조(지역의사선발전형) ①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

- 학의 장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 의료취약지 (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 다)의 분포,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과정,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학비등의 지원) ①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게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학비등"이라 한다)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)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.

-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(이하 "반환금"이라 한다)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
- 2.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「의료법」 제9조에 따른 의 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, 심신의 장애,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, 반환금의 납부,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의무복무) ① 지역의사는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(이하"의무복무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의료법」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

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- ②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1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. 다만, 응급·중증·소아·분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.
- 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. 다만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공 중보건의사로 종사하거나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보건의료인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.
- 3. 이 법 또는 「의료법」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- 4.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.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,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, 산입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전공의 수련)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

려하여 지역의사가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런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. 제9조(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이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할 수있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고, 해당 지역의사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지정 및 지역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응급·중증·소아·분만 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10조(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) ①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·도 내에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

- 의무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·도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다른 시·도의 기관·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·도 내의 다른 기관·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지역·의무복무기 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역의사의 겸직금지)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12조(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) ①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, 관할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

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지역의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정명령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의사의 의무 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역의사에 대한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에 대하여 주거지원, 직무교육 제공,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의 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 며,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해당 시·도 내의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5조(면허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

- 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「의료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제16조(과태료)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